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11. 21.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54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세출 예산 항목에 구청장이 건축물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특별회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항목 추가 (안 제5조제3호)
- 나.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다. 입법예고(2024.10.10.~2024.10.3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도래하고, 세출 항목의 추가로 관내 건축물 안전을 위한 특별회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제3호는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신설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

○ 검토결과

- 안 제5조의제3호 신설 규정은 상위법인 「건축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1)에서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4항에도 특별

1)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²⁾ 및 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행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시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설치 등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20개 자치구로 파악됨.

□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안전을 위한 사업 수행의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고 노후 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7.>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과태료)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